

1. 建築士 業務

建築士가 행하는 業務의 內容을 명확하게 규정하므로써 그 책무와 권한이 정립 될 것이다. 이제 이 규정을 보다 낫은 것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建築士協會 會長任이하 任員 및 會員 諸位께서 노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綜合的인 技術과 審美的 表現이 되어야 할 計劃·設計圖의 精密을 期하고 보다 正確한 施工을 爲하여 指向하는 바를 明示하여, 틀림없고, 보다 신속한 許可處理와 아울러 不美스러운 現場착오가 생기지 않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 建築設計 用役에 關係되는 用語에 對하여서도 定義를 주고, 一般用語와 合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監理와 監督, 用役과 設計 또는 공사비에산(公課雜費를 包含하는)과 設計報酬率의 策定에 對한 定義들이다. 建築士以外的 關係技術者 및 補助員의 資格等이 向題가 될 것이 豫期된다. 따라서 이번 報酬規程에는 이들 事項이 거이 具備되고는 있으나 未備한 點은 內規라도 作成하여 앞날을 도모해야 한다.

2. 資料提供

建築主가 提供하는 資料中 地形現況圖·測量圖·地質調査書 또는 地耐力 試驗 成果書等은 別途規程하여 專門的으로 다루어 져야 하겠으며, 급배수, 전기, 가스, 其他 都市施設의 現況을 標示하는 資料도 一般建築主는 알 길이 묘연하므로 이 또한 別途調査하는 規程이 必要할듯 하다. 따라서 이들은 別途規準料率表 로 그 最下를 提示하는 것이 便利할 것이다.

3. 設計 監理

設計와 監理는 全혀 內容을 달리하는 業務이기 때문에 完全 分離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近來 細分專門化되는 高度의 施工術과 分析綜合되는 精密한 創意力과 美的 表現術이 一致되며 一貫性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全혀 同質 同業務 內容이 아니기 때문에 設計와 監理는 分離 專門化시킬 段階에 이른 것이 分明하다.

또 監理란 法的으로 明示된바는 設計圖書대로 確認하는 程度이고 이事項에 對하여 建築主로서는 監理費를 支拂하는데 인식할 것이며 法的으로 許可된 事項과 現場施工事項이 다르게 되었다면 누구보다도 建築主 自身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設計者의 確認이 必要하다고 느끼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는 許可當局이 合法的인 建築이 되도록 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建築主에게는 別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設計圖書대로 確認한다 하지만, 그저 外觀的인 觀察만으로 材貨, 工法, 強度等을 把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確認하기 爲하여 資格 規定이 없는 補助員을 쓴다는 것도 無理한 것이 되지 아니할까 우려된다. 따라서 監理와 工事監督이란 어떻게 다르며 如何히 處理 하는지 監理確認方法도 提示가 없다.

一般的으로 監理는 다음과 같이 三種類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1. 設計圖書대로 되었는가 確認하는 監理
2. 都給工事의 現場監督
3. 直營工事의 現場管理監督

따라서 이와 같은 監理方式으로 그報酬費는 策定되어야 하며, 確認業務는 許可當局의 補助業務로서 차라리 設計業務의 一部分으로 監理라는 規定없이 設計報酬費에 包含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工事都給契約事項, 指導 監督·施工計劃·工程檢印·處理等은 完全 現場業務이기 때문에 現行監理料率로

筆者: 三成建築設計事務所 代表

前 本協會 會長

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건축은 전기 난방 기타 기술이 綜合적으로 檢討되어야 하므로 簡單히 處理될 수 없는 事項이 많다. 말하자면 小住宅等에서는 問題가 없을 듯하나 規模가 큰 工事에서는 모든 種類의 技術人의 確認責任없는 困難한 것이다.

따라서 現場監理란 보통으로 現場에 가끔 나가보는 정도로 된다는 漠然한 方法으로는 現代 施工技術로서 不合當 할 것이 豫見되며 앞으로는 材料檢査試驗等 그 責任所在가 누구에게 있는가 明確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어떠한 方法으로 確認하며, 누가 어느 때, 어떠한 處理를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內定되어 야 할 것이다. 모든 技術人을 動員하고 각종 計器와 試驗器를 通하여 檢討되어도 다 하지 못하는 內容을 그저 現場에 나가 보면 된다는 安易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監理規定과 그 報酬率은 더 徹底한 研究가 必要하며 建設에의 專門技術이 細分化되는 時期가 올 것이므로 이에 對備하는 것도 念頭에 두어야 하겠다.

4. 實費清算

設計報酬外에 現場踏査測量 其他費用에 對하여서는 雙方合意로 實費清算한 다고 하지만 이의 最下規準을 例示하고 費用의 策定限界를 明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地質調查(boring test)에 있어 보통 지층깊이 10m로 할때 얼마라는 料金表로 提示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實費報償加算式에 依하여 算出하는 것은 번잡하고 未確定 要因이 많으므로 一般料率을 策定하고 特殊事項만을 따로 實費加算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點을 參考로 들었으나 이미 이러한 것들이 規程案에 提示되어 있지만, 보다 明分있는 規程과 料率이 策定되고 建築士의 業務가 正確迅速處理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期待된다.

끝으로 이 設計報酬와는 直接關係는 없을 듯하나 標準住宅·規格化住宅의 設計圖가 云云하는 것은 工業生産品으로 建築을 理解하고 그와 같이 하여 工業品으로 提供하자는데는 同意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創作하는 建築人으로서의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심지어 사무실 관공청을 이러한 식으로 하여 工事費 節減等を 圖謀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다만 어느 기업에서 共通點이 많은 여러 建築을 同時에 이룩하는 데는 適用될지도 모르나, 時間의 흐름에 따라 發展하는 資材와 技術을 排除하는 結果가 되어서는 無理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建築設計 建物創造의 使命感을 느끼며 이 報酬規定에 한층 勇氣와 希望이 샘솟도록 建築士協會와 더불어 關係各機關에 協助를 懇望하는 바이다.

新刊

建築構造學

張起仁 著

4×6 倍版 480面 값 3,900원

普成文化社 發行

연락처 73-9492